



2014. 9.

2013년도 임금협약, 단체협약 잠정합의서

대 전 도 시 공 사
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



2013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서

1. 임금협약 관련

가. 임금인상 : 2012년 총액대비 4.2% 인상

- 2012년도 총액인건비 대비 2.8%인상, 호봉승급분 1.4% 별도인상

나. 통상임금 정상화에 따른 임금채권 지급

- 2년6월(2012.1.1. ~ 2014.6.30)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추가항목 임금채권을 10월말까지 지급한다.

- 단, 위 적용기간 이전 및 2014년도에 대한 통상임금 추가 청구는 포기하며, 필히 개인별(퇴직자, 신규입사자 포함)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지급한다.

※ 통상임금 추가 항목 : 당초 기본급에서 장기근속수당, 기술수당, 기말수당, 급식보조비, 직급보조비, 직책수행비, 교통비, 특정업무수당, 장기근속수당, 위험근무수당, 의료업무수당, 대우수당, 조정수당, 선임수당, 가계안정보조비 추가

2. 단체협약 관련

가.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

-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추어 변경

구분	등급	당초	변경
숙박료 (1박당)	1호(임원)	46,000원 (신용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실비지급)	50,000원 (신용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실비지급)
	2호(1~2급)	46,000원	50,000원
	3호(3급이하)	40,000원	50,000원

※ 숙박기준 : 특별시 및 광역시는 50,000원, 그밖의 지역은 40,000원 지급

나. 공로연수 운영

- 대상 : 정년 잔여기간 6개월 이내인 자 및 본인의 희망시 기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시에는 1년 이내인자를 선정할수 있음
- 방법 : 2015년부터 시행하며,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후 사규개정

다. 직급간 정원 통합운영(4급 ~ 7급) : 부결

라. 정년연장에 따른 호봉확대 : 부결

마. 우대승진 제도의 폐지 : 부결

바. 인사규정 제9조제6항제3호(유가족 특별채용) 삭제

- 인사규정 제9조제6항제3호 및 단체협약서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사. 취업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

- 취업규정 제32조제1항 “별표1” 등을 개정한다. (경조사 휴가일수는 “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”에 의한다.)

3. 복리후생 정상화 관련

가.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 폐지

- 10년·20년·30년(또는 퇴직자)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을 폐지한다.

나. 미취학자녀 보육비 지급 폐지

- 단체협약서 제58조제2항 및 복리후생규정시행내규 제5조제2항을 삭제 한다.

다.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상해보험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

- 건강검진 및 단체상해보험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하여 운영한다.

라. 본인외 가족에 대한 종합건강검진 폐지

- 단체협약서 제69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마. 대학입학 축하금 등 축하금(장학금 등) 및 명절기념품 지급 폐지

- 기금협의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서 삭제한다.

바. 선택적 복지제도 기금으로 운영

- 기금협의회를 통해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 사업으로 추가한다.

사. 해고 또는 감원시 등 조합과 “합의” 삭제 : 부결

4. 규정개정 등 절차이행

- 노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제규정의 개정절차를 이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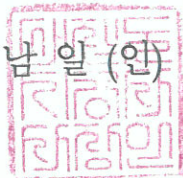
5. 임금 및 단체협약 적용시기

- 2013. 1월부터 적용 : 임금협약 관련 가 항목
- 2014. 3. 7일 부터 적용 : 단체협약 관련 가 항목
- 2014. 10월부터 적용
 - 단체협약 관련 : 바, 사 항목
 - 복리후생 정상화 관련 : 가, 나, 다, 라, 마, 바 항목

2014. 9. 23.

대전도시공사

대표교섭위원 박남일(인)



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

대표교섭위원 도형남(인)

